

행 정 자 치 부

훈계·주의 요구

제 목 기관 포상금 예산반영 없이 임의 사용

기 관 명 경기도

관 계 기 관 안산시

관 련 자 안산시 ○○○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3. 7. 10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안산시 ○○○ ○으로 근무하면서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기관 포상금 집행에 대한 지도·감독 업무 등 ○○○ 업무를 총괄하였다.

경기도 안산시(○○○)는 국민안전처와 환경부로부터 재난 관리실태 평가와 수도사업 운영 관리실태 평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아래 [표]와 같이 기관 포상금을 수령하였다.

[표] 기관 포상금 수령 현황

(단위 : 천원)

자치단체	평가 시책	평가주관	입금일	금액	비고
안산시	계			21,000	
	재난 관리실태 평가	국민안전처	2014-12-30	1,000	
	2014년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	환경부	2015-04-22	10,000	
	2015년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	환경부	2016-04-21	10,000	

「지방재정법」 제15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

또한, 구 행정안전부(현 행정자치부)에서 발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「지방예산질의회신 사례집(2011년)」에 따르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포상금(인센티브)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편입되어야 하고, 임의로 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부서에 해당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.

한편,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, 2015. 1. 22.)」에 의하면 기관 포상금 수령 시 수상 부서 격려비용 또는 해당 분야 공로자에 대한 격려금으로도 사용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.

따라서 중앙부처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당해 기관을 대상으로 받은 포상금은 세입처리 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부합하도록 그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집행했어야 했다.

그러나, 위 관서에서는 국민안전처와 환경부로부터 지급 받은 포상금 21,000,000원을 해당 부서의 법인카드 계좌로 입금 받은 뒤, 위 ○○○○ ○○○의 결재를 통하여 이를 세입조치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회계담당공무원인 ○○○, ○○○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○○○○○○○○ 내 ○○○○○○ 등 3개 관계부서 지원 4,000,000원, 부서 내 직원 상품권 배부 및 회식비 등 격려비용 6,795,950원, 과 직원 워크숍 비용 7,513,120원 등 총 18,309,070원을 예산 편성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안산시장은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기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 조치 등 적의 조치 하시고, 앞으로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